

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7. 10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정이유

-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교육지원 등 교육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의 범위 확대 (안 제3조 제1항)
 - 시세수입액의 1000분의 20 → 시세수입액의 1000분의 30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
- 「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」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" 1000분의 20 " 을 " 1000분의 30 "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제3조(보조금의 기준액의 범위)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시세(세외수입제외)수입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3조(보조금의 기준액의 범위) ①.....1000분의 30.....	보조금 기준액 범위 확대

참 고 법 령

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

제11조 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 ⑥지방자치단체(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)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□시·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

제1조 (목적)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군 및 지방자치 단체인 구(이하 “자치구”라 한다)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보조사업의 범위) 시·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(이하 “보조사업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1998.9.17, 2000.12.27>

1. 학교의 급식시설·설비사업
2.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
3.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
4.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
5.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·문화 공간 설치사업
6. 기타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

제3조 (보조사업의 제한 <개정 2000.12.27>)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00.12.27>

1.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
2.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·군·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
3.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

제4조 (보조의 신청등) ①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조 (목적외 사용의 금지)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
1.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
2.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
3.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
4.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

제6조 (보고 및 검사)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

2.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비보고서
3.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(실적)보고서
4. 기타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

②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 (보조금의 집행)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0.12.27]

부칙 〈제14981호,1996.4.19〉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제15891호,1998.9.17〉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제17025호,2000.12.27〉

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